2020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
신규인가 심사 시행계획

2019. 5.

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
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

목 차

Ⅰ. 추진 개요 ····· 04

Ⅱ. 신청대상 및 인가심사 절차 ····· 05

Ⅲ. 인가심사 항목 및 지표 ····· 07

Ⅳ. 행정 사항 ····· 08

Ⅴ. 운영현황 변경 신청 ····· 10

Ⅵ. 향후 추진 일정 ····· 12

[참고]

1. 신청(설치) 요건 ····· 13

2. 평가영역별 배점표 ····· 12

[서식]

1. 인가심사 신청서 작성 서식(1단계 교육기본여건)

2. 인가심사 신청서 작성 서식(2단계 운영계획서)

3. 운영현황 변경(증원, 경력유/무 전환, 주/야 변경) 신청 서식

2020학년도 인가심사 주요 변경사항 (요약)

구분	기존(2018년도)	변경(2019년도)
신청 대상	▪ **신청 제외** - 행정처분 - 기관평가 불인증(미신청) - 정부재정지원 제한 - 부정·비리 대학	▪ **신청 가능** - **행정처분건 중 입시학사 비위의 정도, 기관평가 불인증(미신청) 주요 사유, 재정지원제한대학 여부**를 인가의 타당성 심사 자료로 활용 ※ **부정비리대학**은 범위 불명확하여 제외
인가 절차 및 지표	▪ **적부심사위원회** : 교원·교사확보율 등 교육여건 확인 ▪ **소위원회** : 8개 항목,13개지표(100점) ▪ **인가심사위원회** : 총괄심사 ※ 인가 대상 : 총점 70점 이상 ※ WCC사업 참여대학 심사 면제 ※ 전환(경력 유·무과정) : 심사승인	▪ **전문대교협** : 교원·교사확보율 등 교육기본여건 확인 ▪ **소위원회** : 7개 항목, 12개지표(100점) ▪ **인가심사위원회** : 총괄심사 ※ 인가 대상 : 총점 70점 이상 ※ WCC사업 종료('19.2월)로 면제 해제 ※ 전환 : 교육여건 충족시 심사없이 승인
심사 경비	▪ **대학 부담** ※ **교당 100만원** + 학과당 150만원	▪ **대학당 부담금 국고 지원** ※ **'19년도 '전문대학 자율역량기반 조성' 사업비에 편성(1억원)**

Ⅰ 추진 개요

1. 기본 개념

○ **(목적) 전문대학 졸업자 등**에게 **계속교육 기회**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**직업심화교육**을 통해 **전문기술인력 양성** 및 **학사학위 수여**

○ **(산업체 경력있는 과정)** 전문대 졸업→(취업 1년 또는 9개월 이상)→학위심화과정 이수→학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경로 구축

○ **(산업체 경력없는 과정)** 일반대학 편입이 아닌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통해 심화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

2. 설치 근거

○ 전문대학은 **교육부장관의 인가**를 받아 **학사학위**를 수여할 수 있는 **전공심화과정**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
※ 근거 : 고등교육법 제49조, 제50조의2 / 동법시행령 제58조의2, 제58조의4

3. 운영체계 : 교육부(총괄) -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(위탁)

○ (교육부→협의회·학교) 매년도 기본계획 수립·통보

※ 전문대학정책과-4261 (2019.5.3. 시행)

○ (협의회→교육부·학교) 인가 및 운영진단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등

○ (협의회→교육부) 대학의 4. 1 기준 교육여건 점검, 인가심사위원회 운영, 운영진단(연차평가) 결과 보고

○ (교육부→대학) 인가사항 통보 및 학사운영 지도·점검(협의회 협조)

Ⅱ 신청대상 및 인가심사 절차

1. 신청 대상

○ 신청대상 대학 :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

○ 신청단위 : 모집단위(학과 또는 계열)

- 전문대학에 소속된 학과 또는 계열로서,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모집단위
- 전문학사 학위과정 모집단위를 기초로 하되, 2개 이상의 모집단위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치 가능
- 대학별로 신청할 수 있는 모집단위의 수는 제한하지 않음

○ 신청요건 : 2020학년도 기본계획 중 「설치요건」을 갖춘 대학 및 모집단위 (세부 내용 <참고 1> 참조)

2. 인가심사 절차

○ **1단계**(여건심사) : [전문대협] 교육기본여건 준수계획 수합 및 확인

※ 신청서 계획 상 교육기본여건 준수 여부 검토, 확인

○ **2단계**(서면평가) : [소위원회] 대학전체 및 모집단위 운영계획 심사

※ 기본여건(교원·교사확보율 등)을 '충족'한 대학에 한해 2단계 심사

○ **인가심사위원회** : 인가심사 결과 총괄 심의

※ 소위원회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행정처분건 중 입시학사 비위의 정도, 기관평가 불인증(미신청) 주요사유, 재정지원제한대학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의 타당성 심사

※ 인가기준 평가점수 : 신청 모집단위별 평가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

○ **교육부** : 인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인가여부 결정 및 통보

〈 심사절차 총괄 〉

단계		평가방법	평가내용	심사 주체
1단계 (여건 심사)	기본여건 확인 (Pass/Fail)	·교육기본여건 정량적 확인	· 교육기본여건 준수 계획 확인 (교원·교사확보율 등) * 여건심사 후, 충족 시 2단계 평가 진행	전문대협
2단계 (서면 평가)	운영계획서 서면평가 (100점)	·대학전체/모집단위별 운영계획 정성평가	·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* 70점 이상인 경우 인가 (e-MU과정은 온라인콘텐츠 구축 여부를 추가 심사)	소위원회
총괄 심의		**· 인가심사 관련 기본 방향 협의 · 인가 타당성 심사 등 총괄 심의**		**인가심사위원회**

3. 심사위원회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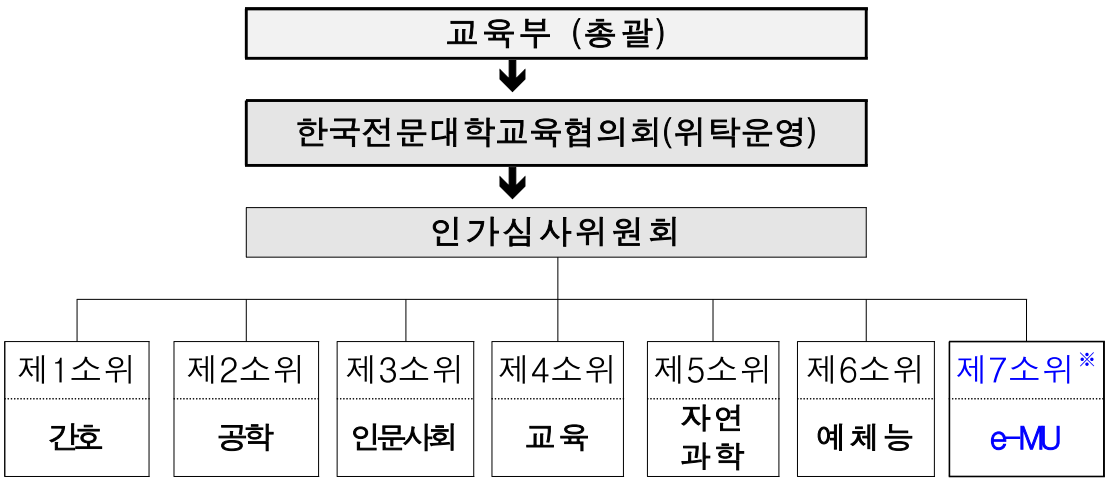
○ 인가심사위원회 : 총 9인 내외(위원장 1인 및 분야별 소위원장)

※ 위원장은 교육부의 승인에 따라 위촉

○ 소위원회 : 분야별 5인 내외(소위원장 1인 포함)

※ 인가신청 규모를 고려하여 전문대교협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며, 객관성 제고를 위해 각 소위원회별로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

〈 심사위원회 구성 총괄 〉



※ e-MU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신규지정 수요가 있을 시 교육부의 별도 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 예정(8월 중)

Ⅲ 인가심사 항목 및 지표

○ 1단계(교육기본여건)

영역		평가 지표
대학 전체	1. 모집정원	1) 전체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20%이내 인가?
	2. 교원확보율	1) (경력無) 대학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인가?('19.4.1. 기준)
		2) (경력有)대학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인가?('20.4.1. 계획 기준)
	3. 교사확보율	1) 대학 전체의 교사확보율이 100% 이상인가?('20.4.1. 계획 기준)
	4.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	1) 소속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산업체 인사 구성 50%이상
모집 단위	1. 운영 기준	1) 전문대학 설치 학과(학부)를 기초한 과정 설치
		2)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%이내 개설
		3) 전문학사 포함 4년 이상의 수업연한(2+2, 3+1) 여부
		4) 40명 이하 별도 학급 운영
	2. 설치 요건	1) (경력無)모집단위의 전체교원확보율 80% 이상,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 인가? ('19.4.1. 기준)
		2) (경력無)모집단위의 전체교원확보율 100% 이상, 전임교원확보율 60% 이상 인가? ('20.4.1. 계획 기준)
		3) (경력有)모집단위의 전체교원확보율 80%이상,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 인가? ('20.4.1. 계획 기준)
	3. 교육과정편성 위원회	1)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설치 및 산업체 인사 구성 50% 이상인가?

○ 2단계(운영계획)

영역		평가 지표	배점
대학 (20)	1.비전 및 지원 체제	1)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사회·산업 수요와 연계한 운영 비전과 전략	5
		2) 대학 차원의 지원 체계	10
	2. 관리 체계	1) 학사 및 성과 관리 체계	5
모집 단위 (80)	1. 개설 목적	1) 개설 과정 선정의 타당성	10
		2) 인력양성 계획	5
	2. 교육과정 운영	1)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추진 체계	5
		2) 교육과정 편성	10
		3) 교육과정 특징 및 정체성	10
		4) 실험·실습 계획 및 인프라	10
	3.현장 중심 교원 역량	1) 현장중심 교원 역량	10
	4.산학협력 및 대외교류	1) 산학협력 실적 및 계획	10
	5.교육품질 관리체계	1) 교육품질 관리 체계	10
합계		**7개 항목 12개 지표**	100

※ 해당 학년도 행정처분, 기관평가 불인증(미신청),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인가 심사총괄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

Ⅳ 행정 사항

1. 2020학년도 신규인가 심사 및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

○ 일시 : ‘19.5.21(화), 14:00 ~

○ 장소 : 대전보건대학교 대강당(9동 4층)
(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)

○ 참석대상 : 관련 부서장, 신규인가계획·운영중 학과장 등

○ 주요내용

- 2020학년도 전공심화과정 신규인가 신청 안내
- 전공심화과정 운영·관리 시 유의사항
-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선 방안 의견수렴
  · (교육부) 전공심화과정 제도개선 방안
  · (연차평가개선TF) 운영진단 항목 및 지표 등 기준(안)

○ 참가신청 기한 및 방법

- ‘19. 5. 16(목)까지 온라인 참가신청(http://naver.me/G1v6c7lp)

2. 신규인가 신청

가. 1차 제출

○ 제출기한 : ‘19.06.05(수), 17:00 까지

○ 제출방법 : 신청대학별 전자문서 공문 제출
(수신 :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)

○ 제출서류 : 인가심사 신청서 (1단계 교육기본여건)

※ 작성 서식: [서식1](엑셀서식) 참조

나. 2차 제출

○ 제출기한 : ‘19.06.26(수), 14:00~18:00 (해당일 제출에 한함)

✓ 기한 엄수 (미제출 시 인가심사 불가)

○ 제출방법 : 전자문서 공문 시행 및 운영계획서 방문제출

○ 제출장소 : 인가심사장 현장 제출 (추후 별도 안내)

○ 제출 서류

- 제출공문 대학별 1부 (전자문서 제출)
- 대학 및 모집단위 운영계획서 6부 (2단계 운영계획서)

※ 작성서식 : [서식2](한글서식) 참조

- USB 1부 (1단계 교육기본여건, 2단계 운영계획서(모집단위별)를 저장하여 대학별 1개로 제출)

○ 유의사항

- 모집단위별로 별책 제본하여 각 6부씩 제출
- 신청서 겉표지에 해당 모집계열, 과정구분 및 모집단위명을 반드시 기재

다. 수수료 및 납부방법

○ 모집단위별 부담금 : 150만원

※ 대학공동 부담금은 국고로 지원

○ 수수료 납부방법

- 추후 별도 통보 : 2019. 6. 10(월) (예정)

3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 모집단위 컨설팅 계획

가. 컨설팅 대상

○ 신규 개설 모집단위(학과) 중 최종취득접수가 하위그룹에 속하는 모집단위 또는 개별 신청 모집단위

* 총 10개 모집단위 내외

나. 추진방법

○ 신규 개설 모집단위의 인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서상의 미흡사항 또는 대학의 운영상 애로점 해소를 위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과의 운영 및 교육 역량 강화 지원

다. 추진일정

시행 계획 수립	⇨	컨설팅 운영매뉴얼 개발	⇨	신청대학 선정	⇨	컨설팅 실시
6월		7월		7월~8월		8월~9월

V 운영현황 변경 신청 (증원, 경력유/무 전환, 주/야 변경)

1. 신청서 제출

○ 제 출 일 : 2019. 6. 26(수) 까지

○ 제출 방법 : 신청대학별 전자문서 공문 제출
(수신 :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)

○ 제출 서류 : 운영현황 변경 신청서 (교육기본여건)
※ 작성 서식: [서식3](엑셀서식) 참조

2. 주요 검토사항

○ 모집정원 : [대학] 전체 전공심화과정의 모집정원이 입학정원 20%이내 여부
[모집단위] 해당 모집단위(학과)의 입학정원 100%이내 개설 여부
○ 교사확보율 : 대학 전체 교사확보율이 100%이상 여부
○ 교원확보율 : [대학]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 50%이상 여부
[모집단위] (경력있는) 전임교원확보율 50%, 전체교원확보율 80%
(경력없는) 전임교원확보율 60%, 전체교원확보율 100%

가. 증원인가

○ 모집정원, 교사확보율, 교원확보율 충족 여부 검토
※ 전년도 모집단위별 충원율이 100% 미만일 경우도 신청 가능함. 다만, 2020년 도입되는 운영진단(현.연차평가)시 재학생 충원률 지표가 포함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

나. 경력 유↔무 전환지정

○ 교사확보율, 교원확보율 충족 여부 검토

다. 주↔야 변경

○ 교사확보율 충족 여부 검토

라. 기타 운영현황 변경

○ 감원 : 정원내 모집인원 변경에 따른 전공심화과정 인원 감원 등

○ 모집단위명 변경

3. 기타

◦ 운영현황 변경(증원 인가, 경력유↔무 전환지정, 주↔야) 신청과 관련한 교육기본여건을 검토하여, 교육부에서 최종 인가 통보

신입생 등록률 부진 모집단위 재심사 계획

[재심사 대상 대학 별도 안내]

1. 추진 배경

○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신입생 등록률 부진* 모집단위(학과)에 대한 2020학년도 운영 계획 재심사 추진

* 2019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0%

2. 재심사 대상

○ 재심사 대상 : 2019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0% 모집단위(학과)

○ 재심사 신청 대상

- 2020학년도 전공심화과정 모집·운영을 유지하려는 모집단위

※ 재심사 대상으로서 2020학년도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모집단위(학과)는 모집·운영을 포기(폐과)하는 것으로 처리

3. 재심사 절차

○ 2020학년도 신규인가 심사에 포함하여 인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, 재심사 기준 및 절차는 신규인가 심사와 동일하게 적용

- 1단계(여건심사) : [전문대협] 교육기본여건 준수계획 수합 및 확인
- 2단계(서면평가) : [소위원회] 대학전체 및 모집단위 운영계획 심사
- 인가심사위원회 : 인가심사 결과 총괄 심의

※ 인가기준 평가점수 : 신청 모집단위별 평가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

- 교육부 : 인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인가여부 결정 및 통보 (재심사 미신청 모집단위 폐과 포함)

4. 재심사 신청방법 (신규인가 신청과 동일)

○ 1차 제출(신청서 및 교육기본여건) : '19.06.05(수), 17:00 까지

○ 2차 제출(운영계획서) : '19.06.26(수), 14:00~18:00 (해당 제출일에 한함)

○ 재평가 수수료 : 모집단위별 부담금 면제

Ⅵ 향후 추진 일정

절차	구분	일정
①	인가신청 공고	: ’19.5.14
②	2020학년도 신규인가평가 설명회	: ’19.5.21
③	인가(재심사)신청서 접수	
	1차 접수: 대학별 신청 및 교육기본여건 제출	: ～’19.6.5
	2차 접수 : 모집단위별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	: ～’19.6.26
④	증원, 전환 및 운영현황 변경 신청 접수	: ～‘19.6.26
⑤	인가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	: ～‘19.6.21
⑥	인가(재심사)신청서 심사	: ’19.6.26～6.28
⑦	인가(재심사) 평가결과 교육부 보고	: ‘19.7월 초
⑧	인가 결과 발표(교육부) - 인가심사(재심사) 결과 및 증원·감축 인원	: ‘19.7월 말
⑨	모집결과 · 교육여건 점검	: ‘20.3월 이후~

끝.

참고1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청(설치)요건

※ 2020학년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(2019.5) 중 설치요건

1. 설치기준

○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을 준용하여 기준면적을 산정하고,「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의2」에 따라 확보율을 적용

<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(별표2, 별표3) >

기준	항목	확보율	
		경력있는 과정	경력없는 과정
대학 전체	교사 확보율	100	100
	전임교원 확보율	50	50
모집 단위	전임교원 확보율	50	60
	교원 확보율(**전임·겸임·초빙교원 포함**)	80	100

2. 교사 확보율

○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 기준('20.4.1 계획 기준, 전문학사・학사+전공심화과정 편제정원)으로 기준면적* 100% 이상 확보해야함

* **전문학사 및 경력 있는 과정** : 대학설립운영규정(별표3)의 70%

* **경력 없는 과정** : 대학설립운영규정(별표3)의 100%

○ 교사확보율은 개설 과정이 주간일 경우 주간 과정, 야간일 경우에는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으로 산정(주·야간 학생수를 별도로 산정)

* 주・야간 학생수 중 많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

○ 산정 시 학생 수는 **편제정원(편제완성연도) 기준**으로 함

< 교사 기준면적 산정 예시(자연계열 개설시) >

▪ '20학년도에 **A학과**(2년 주간과정, 입학정원 50명, 경력있는과정)과 **B학과**(1년 야간과정, 입학정원 50명, 경력없는과정)를 **신설**할 경우

구분	편제정원			'19.4.1.기준 기준면적(㎡) (A)	보유(예상)면적		비고
	'19년 전문학사	'20년 경력있는 과정 (신설)	'20년 경력없는 과정 (신설)		'19 보유면적 (B)	'20. (추가확보) 면적 (C)	
주간	700	100	-	((700+100)×17)×70%=9,520	10,115	2,040	대학은 주간·야간별 기준면적에 부합되게 교사 배정·활용
야간	150	-	50	(150×17)×70%+(50×17)×100%=2,635			

※ 대학설립운영규정 [별표 3]

구분 \ 계열별	인문·사회	자연과학	공학	예·체능	의학
학생1인당 교사 기준면적	12	17	20	19	20

※ 보유면적(㎡) : 기본시설+지원시설+연구시설

3. 교원 확보율

○ 대학 전체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**대학의 정원 내 편제정원을 기준**으로 산정하며, 모집단위 교원확보율은 정원 내 편제정원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편제정원을 합하여 산정

【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】('20.4.1 계획 기준)

○ 대학전체 :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

○ 모집단위 :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, 전체교원 확보율 80% 이상

【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】

▸ 인가신청 시('19. 4. 1. 기준) 아래요건을 충족한 대학만 신청 가능

○ 대학전체 :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

○ 모집단위 :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, 전체교원확보율 80% 이상

✔ `19.4.1 기준 교원확보율은 `19.9월 이후 공시되므로 인가신청시 대학 제출 자료(계획)로 심사

✔ `19.9월 이후 교육여건(교원확보율)을 재점검하고 상기 기준 미달 시, 인가 결정 취소함

▸ **인가 후 점검 기준**('20. 4. 1. 기준)

○ 대학전체 : 전임교원 확보율 50% 이상

○ 모집단위 : 전임교원 확보율 60% 이상, 전체교원 확보율 100%이상

<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예시 >

예) 자연계열에 속하는 모집 단위, 신청인원이 20명인 경우

구분	전문학사학위		학사학위		확보필요교원				최종 확보 교원
	입학 정원 (A)	수업 연한 (B)	정원 (C)	수업 연한 (D)	편제 정원 (E)=A*B	편제필요 교원 (F)=E/20*50%	학사 정원 (G)=C+D	학사필요 교원 (H)=G/20*60%	(I)=(F)+(H)
3년제	30	3	20	1	90	2.25	20	0.6	2.85(3)
	50	3	20	1	150	3.75	20	0.6	4.35(5)
	160	3	20	1	480	12	20	0.6	12.6(13)
2년제	30	2	20	2	60	1.5	40	1.2	2.7(3)
	50	2	20	2	100	2.5	40	1.2	3.7(4)
	160	2	20	2	320	8	40	1.2	9.2(10)

대학설립운영규정 [별표 5]

계열별	인문·사회	자연과학	공학	예·체능	의학
교원1인당 학생수(명)	25	20	20	20	8

4. 모집 정원

○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인원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

○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총학생수는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연도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(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)

※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라 함은 “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”과 “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”을 포함

※ 제4호(장애인), 북한이탈주민・외국인(6호), 재외국민 등(7호)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상기 정원 외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 가능

참고2 평가 영역별 배점표

□ 1단계 (교육기본여건) : 설치·운영기준 충족여부 확인

영역		평가 지표
대학 전체	1. 모집정원	1) 전체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이 입학정원의 20%이내 인가?
	2. 교원확보율	1) (경력無) 대학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인가? ('19.4.1. 기준)
		2) (경력有)대학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인가? ('20.4.1. 계획 기준)
	3. 교사확보율	1) 대학 전체의 교사확보율이 100% 이상인가? ('20.4.1. 계획 기준)
	4.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	1) 소속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산업체 인사 구성 50%이상
모집 단위	운영 기준	1) 전문대학 설치 학과(학부)를 기초한 과정 설치
		2)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%이내 개설
		3) 전문학사 포함 4년 이상의 수업연한(2+2, 3+1) 여부
		4) 40명 이하 별도 학급 운영
	2. 설치 요건	1) (경력無)모집단위의 전체교원확보율 80% 이상,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 인가? ('19.4.1. 기준)
		2) (경력無)모집단위의 전체교원확보율 100% 이상, 전임교원확보율 60% 이상 인가? ('20.4.1. 계획 기준)
		3) (경력有)모집단위의 전체교원확보율 80%이상, 전임교원확보율 50% 이상 인가? ('20.4.1. 계획 기준)
	3. 교육과정편성 위원회	1)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설치 및 산업체 인사 구성 50% 이상 인가?

※ 1단계(교육기본여건) '충족'한 대학에 한해 2단계 심사 실시

□ 2단계 (운영계획) : 대학 전체 및 모집단위의 운영 계획 심사

영역		평가 지표	배점
대학 (20)	1.비전 및 지원 체제 (15)	**1)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사회·산업 수요와 연계한 운영 비전과 전략** -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연계 - 지역 사회·산업 특성 및 전망 분석 - 목표 실현 및 지속 가능성	5
		2) 대학 차원의 지원 체계 - 운영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 편성 -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의지 - 교수학습 지원 체제 - 관련 학칙 및 규정 정비	10
	2. 관리 체계 (5)	**1) 학사 및 성과 관리 체계** - 엄정한 수업 및 평가 관리 - 학생 지원(상담, 경력개발, 취·창업 등) 체제 - 교육만족도 관리 체제	5
모집 단위 (80)	1. 개설 목적 (15)	**1) 개설 과정 선정의 타당성** - 대학 특성화전략 및 발전계획과의 연계 - 지역 사회·산업 인력수요 분석·반영 - 대학 차원의 육성 및 지원 계획	10
		2) 인력양성 계획 - 인력양성 목적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- 학생자원 수요 전망 및 확보 계획 - 학사학위 수준 적합성	5
	2. 교육과정 운영 (35)	**1)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추진 체계** -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-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 및 활동의 적극성	5
		2) 교육과정 편성 - 산업체 등 수요자 요구분석 반영 적절성 - 교육과정 개발 절차의 합리성 -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대학차원의 행·재정적 지원 (기준, 규정 마련·준수 등)	10
		3) 교육과정 특징 및 정체성 - 전문학사과정과의 연계성 - 전문학사과정과의 차별성 - 학사수준 직업교육의 정체성	10
		4) 실험·실습 계획 및 인프라 - 실험·실습교육 운영 계획의 타당성 - 현장직무 분석과 실험·실습교육 연관성 - 실험·실습 기자재 확보·활용의 적절성	10
	3. 현장 중심 교원 역량 (10)	**1) 현장중심 교원 역량** - 교원의 전공 적합성 - 교원의 현장경력 및 산학협력 실적 - 현장중심 겸임·초빙 교원 활용 적절성 - 교원의 역량개발 지원 계획	10
	4. 산학협력 및 대외교류 (10)	**1) 산학협력 실적 및 계획** - 산학협력 및 대외교류 실적 - 산학협력 및 대외교류 계획	10
	5. 교육품질 관리체계 (10)	**1) 교육품질 관리 체계** - 자체평가 및 성과분석 체계 합리성 - 환류 체계에 의한 교육과정 개선	10
합계		**7개 항목 12개 지표**	100